

2013년부터 달라지는 농수산식품정책 (축산관련)

출처 :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
(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)

1.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표시제도 개선

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(☎ 02-2023-7785)

■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가격 표시 제도가 개선됩니다.

-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'13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.
 - 음식점,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 (위탁급식영업 제외)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,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.
 -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서는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하여 100그램당 가격 표시를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.
- 또한 면적 150㎡이상(약 45평)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(8만여개)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

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. ('13년 1월 31일 시행, '13년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)

- 외부 가격표시는 가격과 메뉴(5개 이상 권장)를 표시하되,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(조례 포함)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(주출입구 등)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

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음식점 메뉴판, 소비자 중심으로 확보된다

<음식점,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표시제도 개선>

- ▶ 추진배경 :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 및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
- ▶ 주요내용
 - ① 모든 음식점 최종 지불가격표시 및 식육 100그램당 가격 표시
 - ②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(대상 : 신고면적 150㎡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)
- ▶ 시행일 : 2013년 1월 (외부 가격표시는 '13년 4월 30일 까지 계도기간 운영)

» 축산수첩

2.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 방법 등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(☎ 044-201-2419)

■ 저가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방지와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.

- 농수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 및 음식점의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게 됩니다.
-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행 쇠고기, 돼지고기 등 12개 품목에서 양(염소 포함)고기, 고등어, 살아있는 물고기, 배달용 돼지고기(족발, 보쌈 등) 등을 추가하여 16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.
 - (현행, 12개 품목)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 (배달용 포함), 오리고기, 쌀, 배추김치, 광어, 우럭, 낙지, 참돔, 미꾸라지, 뽕장어
 - (추가, 16개 품목) 염소고기, 고등어, 명태, 갈치, 배달용 돼지고기(족발, 보쌈 등),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, 살아있는 수산물

* 배달용 돼지고기,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, 살아있는 수산물은 품목 개수로 포함되지 않음

- 또한, 음식점에서 소비자 오해요인 제거,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, 표시위치 및 배추김치 표시방법 등을 개선하였습니다.
 - 글자크기 : (현행) 음식명 1/2이상 → (개선) 음식명과 동일 또는 크게
 - 표시위치 : (현행) 규정 없음 → (개선) 음식명 옆 또는 하단
 - 혼합표시 : (현행) 규정 없음 → (개선)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(2개 품목)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<알림소식>보도자료>원산지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

<2013년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등 개선>

▶ 추진배경 : 수입 농수산물 · 식품의 국산 둔갑방지 및 소비자 알 권리 충족

▶ 주요내용

- ① 농수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 원산지표시 의무화
- ② 음식점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(기존 12개 품목 → 16개 품목)
- ③ 음식점 원산지 표시 추가(배달용 닭고기 → 배달용 닭 · 돼지고기, 배추김치 →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함께 포함) 및 살아있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
- ④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
 - (글자크기) 음식명 1/2 → 음식명과 동일 (표시위치) 규정없음 → 음식명 옆 또는 하단 (혼합표시) 규정없음 →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(2개 품목)

▶ 시행일 : 2013.6. (잠정)

※ (잠정) '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' 개정절차 진행 중으로 최종 시행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음

3.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단계적('13~'16년)으로 전환하고, 축산업 등록 대상 축종을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(☎ 044-201-2317)

■ 일정규모 이상 가축(소, 돼지, 닭, 오리)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 할 계획입니다.

- 축산법상 축산업의 4개 업종 중 종축업, 부화업, 정액등 처리업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3년부터 허가제를 도입하고,

- 가축사육업은 축종별(소, 돼지, 닭, 오리 등) 사육규모에 따라 2013년~2016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 도입할 계획입니다.

축종별 축산업 허가제 도입계획 (단위: m²)

축종	규모	기업	전업	준전업	소규모
		'13년	'14년	'15년	'16년
축종	소	1,200 초과	600초과~1,200	300초과~600	50초과~300
	돼지	2,000 초과	1,000초과~2,000	500초과~1,000	50초과~500
	닭	2,500 초과	1,400초과~2,500	950초과~1,400	50초과~950
	오리	2,500 초과	1,300초과~2,500	800초과~1,300	50초과~800

• 현행 축산업 등록제는 허가대상이 아닌 모든 소규모 농가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.

* 등록기준 : (현행) 소 300m², 돼지 등 50m² 초과 사육시설 → (변경) 허가대상 사육규모 미만의 모든 농가

* 등록축종 : (현행) 4종(소 . 돼지 . 닭 . 오리) → (변경) 11종 우제류.가금류

☞ (참고) 농림수산물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축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

<2013년도 축산업 허가제 도입>

▶ 추진배경 :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,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

▶ 주요내용

① 축산업 허가제를 축종별(소, 돼지, 닭, 오리) 사육규모에 따라 2013년~2016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 도입(사육 규모에 따라 각각 1년씩 유예기간 설정)

② 축산업 등록제는 허가대상이 아닌 사육규모 미만과 우제류 가금류 사육농가는 가축사육업으로 확대

▶ 시행일 : 2013.2.23.

4.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
농림수산물식품부 축산경영과 (☎ 044-201-2342~3)

■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'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'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

• 현재 사료시장에서 축산농가가 외상거래하는 비중이 약 50%임을 고려할 때, 외상거래를 현금거래로 전환 시 약 12~15%에 달하는 이자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 지원규모 및 조건(안) : 1,200억원(3%, 2년 상환)

※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절차 등은 농림수산물식품부 홈페이지(www.mifaff.go.kr)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

☞ (참고) 농림수산물식품부>알림소식>보도자료>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

<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(신규)>

▶ 추진배경 : 축종별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료구매비용 절감 및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

▶ 주요내용

① 외상거래를 현금거래 등으로 전환하여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료구매자금 지원
- 지원규모 및 조건(안) : 1,200억원(3%, 2년 상환)

▶ 시행일 : 2013.1.1.

※ (잠정) '12.12.28일 현재 국회예산 심의 중으로 최종 확정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음

5.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시행
농림수산물식품부 방역총괄과 (☎ 044-201-2355)

» 축산수첩

■ 농장에서 사육중인 동물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산란계에서 돼지까지 확대 시행됩니다.

-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는 2012년 3월 산란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, 동물복지 수준·도입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돼지('13), 육계('14), 한·육우 및 젃소('15) 순으로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
-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가는 지속 가능한 선진화된 축산업을 영위하고, 소비자는 인증표시 확인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.

☞ (참고) 농림수산물식품>알림소식>보도자료>한단계 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축산농장에 최초 도입

<2013년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적용 축종 확대>

▶ 추진배경 : 농장에서 사육중인 동물의 복지수준 제고를 위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순차적 확대

▶ 주요내용

① '13년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산란계에서 돼지까지 확대 시행

* ('12) 산란계 → ('13) 돼지 → ('14) 육계 → ('15) 한육우·젃소

▶ 시행일 : 2013.5. (잠정)

※ (잠정) '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' 개정 추진 중으로 시행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

6.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기준 완화
농림수산물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☎ 044-201-1858

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시 품목별 재배

면적·수확면적,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·출하량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게 됩니다.

● 품목별 재배면적은 기존 등록정보에 '3% 초과되는 경우 변경등록' 하도록 하였으나 2013년부터 '10% 초과되는 경우 변경등록' 하도록 완화하게 됩니다.

● 또한 가축종류별 상시 사육마릿수가 '20%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' 하도록 하였으나 '10%'로 조정하는 대신 '10%를 초과하더라도 일정마릿수 이하의 규모(소 3마리 이내, 돼지 50, 닭 1,000, 오리 500)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' 됩니다.

● 아울러 가축종류별 출하량은 등록된 정보의 '3%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'을 하도록 하였으나 '20% 초과'로 완화하되, '20%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(소3마리, 돼지 50, 닭 1,000 등)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' 됩니다.

☞ (참고) 농림수산물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·수확면적 등의 변경범위 고시

<2013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범위 완화 항목>

▶ 추진배경 : 농업인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(품목별 재배면적 등) 변경범위 완화

▶ 주요내용

① 품목별 재배면적 변경범위 완화(3% 초과 → 10%로 완화)

②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 조정(20% → 10%, 초과하더라도 일정 규모는 이내 미변경)

③ 가축종류별 출하량 완화(3% → 20%,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 초과는 변경등록)

▶ 시행일 : 2012.12.6.

7.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·일원화

농림수산물부 친환경농업과 (☎ 044-201-1872)

■ 농산물, 가공식품, 수산물로 각각 운영되고 있던 인증제를 통합·일원화하고, 법 제명도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에서 「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」으로 변경됩니다.

- 수산물은 유기, 무항생제, 활성처리제 비사용으로 인증대상 범위도 확대 되고,
-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수산물을 취급·재포장하면 과태료를 부과(최고 500만원)하도록 재포장인증을 의무화하여 부정 친환경농수산물 유통을 차단할 계획입니다.

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〈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·일원화〉

▶ 추진배경 : 다원화된 친환경 인증제도를 통합·일원화하여 친환경 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

▶ 주요내용

- ① 「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제명 변경
- ② 인증대상 범위 확대(유기수산물, 무항생제수산물,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)
- ③ 재포장인증 의무화

▶ 시행일 : 2013.6.2.

8. 농어업 FTA 보완대책 성과 및 투융자 계획을

투명하게 공개

농림수산물부 농업정책과 (☎ 044-201-1719)

■ 한·미 FTA 발효 이후 「FTA 보완대책」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보완대책 및 투융자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·공개할 계획입니다.

* 한·미 FTA에 대응하여 정부는 총 24.1조원 규모의 「한·미 FTA 보완 대책」(’08~’17)을 마련 추진

- 2013년부터는 보완대책의 내실화를 위하여 그간 추진해 온 보완대책의 사업별 목표, 기대효과 등의 달성 정도를 측정
-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.
- 이를 토대로 대책을 내실 있게 보완하고, 농어업인 수요 및 현장 여건에 적합한 신규 사업 발굴 등 보완대책을 지속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〈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〉

▶ 주요내용

- ① 정부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재정지원의 다음 회계연도 계획 금액을 기능별·성질별로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
- ② 정부는 매년 5월 31일까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직전 회계연도 집행실적, 성과 및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

▶ 시행일 : 2013.1.1.